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0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제안이유

-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669호, 2005. 8. 4. 공포, 2006.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19318호, 2006.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고,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센터를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센터소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정책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1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서 등은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안 제6조에 법인이 선임한 센터장에게도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p>	<p>○ 제6조 2항은 시장이 선임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음..</p>
<p>○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동 조례가 공포되면 이전 조례에 근거하여 5년간 위탁받은 법인도 이 조례를 적용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p>	<p>○ 이미 위탁받은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p>
<p>○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실비지급 근거를 조례로 정한다면 그 많은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p>	<p>○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봄.</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7호
의결 년월일	2006. 10. 19 (제131회)

제안년월일 : 2006. 10. 12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 스스로 센터장을 선임하고 임기를 정하도록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탁받은 법인에게도 3년의 센터장 임기를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만 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5년간 위탁받은 법인도 현행 조례안에서 정한 3년의 위탁기간을 적용받게 되어 있어,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수정함.

2. 주요골자

- 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만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도록 함.(안 제6조 2항)
-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한하여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부칙 2항 경과조치)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2항중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항 경과조치중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한하여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p> <p>①생략</p> <p>②<u>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u></p> <p>부칙</p> <p>①생략</p> <p>②(경과조치) <u>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u></p> <p>③생략</p>	<p>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p> <p>①(조례안과 같음)</p> <p>②<u>시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u></p> <p>부칙</p> <p>①(조례안과 같음)</p> <p>②(경과조치) <u>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한하여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u></p> <p>③(조례안과 같음)</p>

[수정안포함]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시장이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

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각각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각각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

제17조(실비 지급) 시장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미 위탁받은 법인에 한하여 동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